

완도군의회 공고 제2025 - 20호

##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2. 발 의 자 : 조 인 호 의원
3. 제정이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함

####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회 운영(안 제9조, 안 제10조)
- 윤리 헌장 및 행정지원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14조, 안 제15조)

#### 5. 관련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9.

####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 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 1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b>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b>			

#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 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현장(이하 “윤리 현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담당 과장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4. 인공지능사업자

5. 인공지능이용자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윤리 헌장)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윤리 현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윤리 현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 1. 22.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